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4689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구합684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18. 성립한 취득세 8,308,178,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0,817,880원, 2015. 9. 2. 성립한 취득세 10,445,921,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44,592,190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도 그 논거로 거론하고 있으나, 위 개정 규정은 구 [redacted]이나 원고가 [redacted]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서 이른바 창설적 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6쪽 아래에서 2행의 "원고가"를 "구 삼성물산이나 원고가"로 고친다.

○ 7쪽 4~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을 "이 사건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인 [redacted]의 과점주주가 된 구 [redacted]이나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7쪽 5~6행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탁자([redacted]신탁) 아닌 위탁자([redacted]사이드)의 과점주주(원고)가"를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redacted]신탁이 위탁자인 [redacted]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2

으로 하고 위탁자인 [redacted]의 과점주주가 된 구 [redacted]이나 원고가"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점주주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이 담보신탁한 신탁재산을 고려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법인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구 [redacted]이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재산의 존재 및 가액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레이크사이드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레이크사이드의 과점주주인 구 [redacted]이나 원고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2

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redacted]이나 원고가 [redacted]의 과점주주가 되기 전인 2012. 3. 14.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케이비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설사 구 [redacted]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신탁재산의 존재 및 가액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주식취득 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redacted]가 이 사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인 레이크사이드의 실질적 소유로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2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